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81 호 2019. 6. 27.(목)

선	기 관 의 장
람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59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34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0호[2018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승인사항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2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4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5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6호[농소2동 통·반조정 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7호[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8호[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15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761호[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21호선)사업].....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766호[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입법예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767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입법예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769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8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59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122명”을 “121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공무직 등의 정원표(제5조 관련)

부 서 별	계	공무직				청 원 경 찰
		사 무 실무원	전 문 실무원	시 설 관리원	환 경 미화원	
합 계	<b>121</b>	-	3	64	50	<b>4</b>
주민소통실	4			4		
총 무 과	6			6		
문화체육과	4			4		
도 서 관 과	8			8		
징 수 과	2			2		
복지지원과	4			4		
사회복지과	1		1			
<b>가족정책과</b>	5		1	4		
농 수 산 과	2			<b>2</b>		-
환경미화과	51		1		50	
건 설 과	8			6		2
도 시 과	2			1		1
공원녹지과	3			3		
교통행정과	4			4		
건축주택과	2			1		1
보 건 소	9			9		
문화예술회관	3			3		
의회사무과	1			1		
농 소 2 동	1			1		
강 동 동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농수산과 청원경찰 퇴직(2019. 6. 30.)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여 청경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수 : 121명(농수산과 청원경찰 △1)

나. 부서별 정수 조정 내역

**1) 시설관리원**

- 민원지적과 △1 ⇒ 농수산과 증1

**2) 청원경찰**

- 농수산과 △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34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매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동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로 305, 3층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실용음악학원 야외 발표회)

**4. 점용 지역의 위치, 면적 및 채취량**

가. 위치 : 신천동 745-118번지

나. 면적 : 1,040㎡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6. 30. ~ 2019. 6. 30.(1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140호

##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 승인사항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9. 6. 24.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7.

###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420,193,069,0 10	425,935,286,95 3	363,261,583,93 7	62,673,703,01 6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15,367,635,071	354,551,923,311	60,815,711,760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9,554,742,000	10,567,651,882	8,709,660,626	1,857,991,256
	의료급여기금	183,150,000	196,385,900	174,440,080	21,945,8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1,747,000	292,168,900	290,070,350	2,098,550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000	6,401,929,650	5,564,159,390	837,770,260
	주 차 창	3,515,685,00 0	3,677,167,432	2,680,990,806	996,176,626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계	80	92,294,286,530	49,067,267,290	41,462,697,418	1,764,321,822
명 시 이 월	25	18,046,061,930	10,880,619,340	6,062,997,400	1,102,445,190
사 고 이 월	13	7,206,391,810	4,862,964,270	1,681,550,908	661,876,632
계속비이월	42	67,041,832,790	33,323,683,680	33,718,149,110	-

○ 성과보고서

(단위 :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6	69	141	15	122	4	363,261,583,937	315,881,099,970	47,380,483,967
기획홍보실	1	3	5	-	5	-	1,324,117,300	1,369,764,630	△45,647,330
행정지원국	1	20	43	6	35	2	82,567,020,157	81,802,269,276	764,750,881
복지경제국	1	27	54	6	46	2	180,187,851,699	160,991,866,105	19,195,985,594
건설도시국	1	17	34	3	31	-	86,192,867,111	59,817,168,882	26,375,698,229
보건소	1	1	2	-	2	-	11,392,639,740	10,416,027,470	976,612,270
의회사무과	1	1	3	-	3	-	1,597,087,930	1,484,003,607	113,084,323

## ○ 기금현황

(단위 : 원)

종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6종	5,561,517,007	1,092,096,134	6,653,613,141

## ○ 채권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865,993,770	79,017,300	114,289,650	1,865,993,770
일 반 회 계	1,468,038,880	-	50,000,000	1,468,038,880
기타특별회계	5,746,040	1,984,550	2,044,450	5,746,040
기 금	392,208,850	77,032,750	62,245,200	392,208,850

## ○ 채무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일 반 회 계	해	당	없	음
기타특별회계				

##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해연도말현재액
		증 가	감 소	
계	622,411,895,587	18,310,842,884	5,583,800,890	635,138,937,581
행 정 재 산	620,966,243,982	18,310,842,884	5,471,892,890	633,805,193,976
일 반 재 산	1,445,651,605	-	111,908,000	1,333,743,605

##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보유현황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643	6,303,119,000	47	917,194,000	690	7,220,313,000
정수물품	643	6,303,119,000	47	917,194,000	690	7,220,313,000

## ○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불 용 액
계	1	16,200,000	16,200,000	16,200,000	-
일반회계	1	16,200,000	16,200,000	16,200,000	-
기타특별회계	-	-	-	-	-

##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707,988,821,638	수 익	342,808,826,305
부 채	10,864,270,342	비 용	314,621,391,445
순자산	697,124,551,296	운영차액	28,187,434,860

※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청무과 (T.241-7305, FAX241-7209)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9-142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협의) 년월일	허가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m <sup>2</sup> )	허가(협의) 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6. 21.	2019 - 9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 4길 7-7	강석진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3 일원	160	2019. 6. 21 ~ 2019. 9. 1.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계류장 설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9-144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협의) 년월일	허가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협의) 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6. 24.	2019 - 10	울산 복구 산성로 40	울산지식 산업센터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6 일원	75	2019. 7. 16 ~ 2019. 8. 31.	중소기업 근로자 하계휴양소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45호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지정취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19. 7. 1.
- 지정대상 : 43개소

총 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기타공원	
43	31	6	1	4	1

※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변경됨.

- 지정범위 : 공원 면적 전체
- 계도기간 : 2019. 7. 1. ~ 9. 30.(3개월 간)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19. 10. 1.부터(과태료 2만원)

#### 3. 고시방법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구보, 동 게시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금연지도(☎ 052-241-8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 현황]

○ 금연구역 : 43개소

연번	구분	공원명	소재지	면적(㎡)
1	어린이공원	291공원(햇빛공원)	중산동 1284-7	1,511.3
2	어린이공원	292공원(별빛공원)	중산동 1285-7	1,509.5
3	어린이공원	293공원(달빛공원)	중산동 1286-7	1,503.1
4	어린이공원	중산어린이공원	중산동 569	5,443.0
5	어린이공원	매곡제1어린이공원	매곡동 848	1,500.0
6	어린이공원	신천어린이공원	신천동 114-5	2,077.5
7	어린이공원	상안어린이공원	상안동 353	4,795.0
8	어린이공원	우리공원(호계제1어린이공원)	호계동 263-2	2,066.0
9	어린이공원	희망공원(호계제2어린이공원)	호계동 262-1	1,941.0
10	어린이공원	해맑은공원(호계제3어린이공원)	호계동 265-8	2,140.0
11	어린이공원	으뜸공원(호계제4어린이공원)	호계동 284-5	1,840.0
12	어린이공원	오뚜기공원(호계제5어린이공원)	호계동 256	1,551.0
13	어린이공원	종달새공원(호계제6어린이공원)	호계동 276-4	2,041.0
14	어린이공원	수동공원(호계제7어린이공원)	호계동 669	1,500.0
15	어린이공원	삼밭골공원(꽃무릇놀이터)	호계동 901	1,818.1
16	어린이공원	장등공원(교통놀이터)	호계동 997	2,451.0
17	어린이공원	산방등대공원(바다놀이터)	호계동 1013-1	1,501.4
18	어린이공원	당수골공원(구름놀이터)	호계동 1041-1	1,500.0
19	어린이공원	뫼골공원(숲속놀이터)	호계동 1028-1	1,500.2
20	어린이공원	누리공원	화봉동 1457-3	6,248.9
21	어린이공원	가온어린이공원	화봉동 1471-1	1,506.6
22	어린이공원	아람어린이공원	화봉동 1338-2	1,632.4
23	어린이공원	아라어린이공원	화봉동 1339-3	1,509.4
24	어린이공원	통새미공원(화봉제1어린이공원)	화봉동 649	1,554.7
25	어린이공원	송내공원(화봉제2어린이공원)	화봉동 424-1	4,218.3
26	어린이공원	청솔공원(화봉제3어린이공원)	화봉동 468-1	1,539.4
27	어린이공원	두부곡공원(화봉제4어린이공원)	연암동 404-2	1,634.6
28	어린이공원	잠실공원(화봉제5어린이공원)	연암동 292	2,513.9
29	어린이공원	늘푸른공원(화봉제6어린이공원)	연암동 379-5	2,063.3
30	어린이공원	안산공원(화봉제7어린이공원)	연암동 311	1,569.4
31	어린이공원	성내어린이공원	염포동 995-11	1,758.0
32	근린공원	온누리공원	매곡동 330-2	20,223.4
33	근린공원	한솔근린공원	화봉동 1469-1	10,258.1
34	근린공원	화봉공원(화봉제1근린공원)	송내1길 15	11,422.7
35	근린공원	상방공원(화봉제2근린공원)	두부곡1길 9	12,025.9
36	근린공원	가람근린공원	화봉동 1471-4	9,939.9
37	근린공원	명촌근린공원	명촌동 683	20,288.0
38	소공원	중리소공원(염포공원)	염포동 524-4	1,129.0
39	기타	중산도시숲공원	중산동 1166-44	253.0
40	기타	미도소공원	새장터5길 13	610.0
41	기타	양정숲속쉼터공원	양정1길 35-1	1,500.0
42	기타	오치골공원	양정동 776-21	7,839.0
43	주제(수변)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송정동 산14-1	272,00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46호

## 농소2동 통·반 조정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일자 : 2019. 6. 27.

통·반 조정내역

구 분	통			반			비고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계	261	262	증 1	2,434	2,444	증 10	
농소1동	35	35	-	418	418	-	
농소2동	44	45	증 1	486	496	증 10	
농소3동	39	39	-	427	427	-	
강동동	32	32	-	204	204	-	
효문동	34	34	-	300	300	-	
송정동	35	35	-	335	335	-	
양정동	20	20	-	123	123	-	
염포동	22	22	-	141	141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47호

##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 가.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936-107번지 일원
    - 나. 면 적 : 11,127㎡
  4. 수행업무의 내용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48호

## 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적측량수행자 : (주)유앤씨
  2. 사업지구 명칭 : 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 가.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203-1번지 일원
    - 나. 면 적 : 100,118㎡
  4. 수행업무의 내용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76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40(2009.5.12)호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고, 제2017-155(2017.08.24.), 제2017-218(2017.11.16.), 제2018-174(2018.07.05.), 제2019-62(2019.04.04.), 제2019-127(2019.06.05.)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1~5차 변경) 인가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21호선)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오토밸리로2공구:송정IC~화봉2지구)사업 개설공사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일원

### 3. 사업규모 : 대로2-21호선(L=1.5Km, B=30m, A=101,567.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5. 사업기간

2009. 05. 14. ~ 2019. 06. 30.

###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766호

## 「울산광역시 복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마. 지원 신청 등(안 제6조)

####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0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4, 팩스번호 :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假將)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 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독거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소화기 ____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____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b>신 청 인</b> (서명 또는 인)						
<b>북 구 청 장</b>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767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생활안전보험 피보험자(안 제3조)
-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률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보험금액 산정(안 제6조)
- 마.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76조

####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4, 팩스번호 :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복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769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71호, 2019. 5. 9.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가 결과, 순위와 총점 등 공개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조정(안 별표 1, 2)
  -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조정 : 31점 → 27점(△ 4)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조정 : 18점 → 20점(증 2)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배점 조정 : 20점 → 21점(증 1)
  -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배점 조정 : 22점 → 25점(증 3)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배점 조정 : 9점 → 7점(△ 2점)

### 3. 근거법규

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나. 행정안전부 예규 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징수과

2) 전화번호 : 052)241-7501, 팩스번호 : 052)241-751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 대비표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2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점) 나. 구 와의 협력사업계획 ----- (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 〔별표 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붙임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계		100	
		31				27	
1. 금융 기관의 대 내 외 적 신용 도 및 재 무 구 조 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21)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유동선커버리지비율(유동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현행과 같음)  ◆ -----, 행정안전부-----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0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금고저장어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0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현행과 같음)		21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7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22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8점) * (현행과 같음)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라. (현행과 같음)		25	
	5. 지역 사회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9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현행과 같음)		7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p> <p>I. 일반원칙</p> <p>1. (생 략)</p> <p>2. (생 략)</p> <p>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p> <p>1. (생 략)</p> <p>가. (생 략)</p> <p>○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u>전체 배점(10점)</u> 배점을 평가</p>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p> <p>○ (생 략)</p> <p>○ (생 략)</p> <p>○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p> <p>* 금융감독원, <u>행정자치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p> <p>2.~5. (생 략)</p>	<p>[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p> <p>I.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II.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u>전체 배점(8점)</u> 배점을 평가</p> <p>나.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금융감독원, <u>행정안전부</u> ----- ----- -----</p> <p>2.~5. (현행과 같음)</p>

## 붙임 2

##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법률 제14839 2017. 7. 26., 타법개정]**제38조 (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791, 2019. 5. 28., 일부개정]

**제48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7.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수, 약정기간, 지정방법,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